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영화제작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2021년 8월 / 영화진흥위원회

본 자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영화제작현장 안전관리 가이드로써 “사회적 거리두리 단계별 방역수칙” 변화에 따라 개별 현장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역수칙”에 대한 상세 문의를 촬영지 소관 지자체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감염예방 안내 조치

- 가. 전체 스태프 및 배우 대상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수칙에 대하여 카카오톡, 밴드, 문자 등을 통하여 수시 공지
- 나. 모든 촬영지(로케이션, 세트 등) 내 예방행동수칙 포스터 및 배너 게시
- 다. 주요 확진자 발생지역 방문 시 자진 신고 접수 안내 및 조치사항 공지
- 라. 유흥단란주점, 감성주점, 클럽나이트 등 유흥시설 방문 자제 권고
- 마. 현장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참고1)

2 감염예방 현장 조치

- 가. 촬영 현장 발열점검체계 구축
 - 발열 증상자의 조기 발견 및 대응을 위한 발열점검체계 구축

구분	발열점검 체계
1단계	전체 스태프 및 배우 대상으로 발열 등 의심증상 발생 시 자진 신고 의무화
2단계	촬영현장 출입자 발열체크
3단계~4단계	전체 스태프 및 배우 대상으로 촬영 중 발열 수시 체크 (1일 2회)

- 나. 공통 행동 요령 의무화

구분	행동요령
개인위생수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및 출퇴근 / 이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 씻기 및 손세정제 사용 생활화하기○ 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예절 지키기(기침 시 옷소매 등으로 가리기)
의심증상 발생 시 출근 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스태프 및 배우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 및 숙소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도록 함- 증상이 심해지면 제작팀에 자진 신고 및 관할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 지역번호+120,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검사

구분	행동요령
최근 해외로부터 입국한 경우	○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스태프 및 배우는 2주간 현장 방문 금지

다. 촬영장소 방역 1일 2회 실시

-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다수 이용 시설 집중 방역

라. 촬영 현장 자체 점검표를 이용하여 체계화된 점검 시스템 구축

- 촬영 현장 자체 점검표 참고

촬영 현장 자체 점검표 항목		확인
대비 계획	○ 현장 내 감염대비·대응 계획 수립 여부 [필수사항] -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에 따른 관리 대책 * 보조 출연자 및 외부 방문자 포함 -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발생에 따른 결근대비 관리대책 등	
	○ 업무를 수행할 전담자 지정 여부	
현장 위생 관리	○ 현장 내 청결·소독 유지 관리 여부 * 중점 관리 시설: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다수 이용 시설 * 분장차량, 모니터룸, 밥차 식사장소 등이 있는 경우 위생관리 대상에 포함	
	○ 손을 씻을 수 있는 개수대 구비 여부	
	○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 구비 및 비치 여부 * 마스크, 비누, 손소독제, 방역용 소독약제, 체온계, 일회용 핸드타월, 화장지 등을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비·비치	
개인 위생 관리	○ 감염병 예방 관리 수칙(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요령 등 스태프 및 배우 교육 실시 여부 * 보조출연자, 외부 방문객 포함	
	○ 촬영현장 내 전파 방지를 위한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안내 여부 * 홍보 안내문이나 포스터 부착여부 등	
감염 확산 방지	○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발열(37.5℃)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을 확인하는 상시 모니터링 실시 여부	
	○ 최근 14일 이내 해외에서 입국한 스태프 및 배우가 있는지 여부	
기타	○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스태프 및 배우, 외부 방문객 포함),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발생 또는 촬영현장 방문 여부	

2021 . 0. 0

점 검 자 성명 (인)
 제작실장 성명 (인)
 프로듀서 성명 (인)

마. 커피, 음료, 간식 일회용품 사용 및 수시 방역소독 의무화

바. 식사진행

- 가급적 개별 식사를 자제, 외부 식당 이용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을 준수하여 식당 이용
- 밥차 이용시 일회용품 사용권장 및 식당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 촬영장 내 식사 진행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준수

사. 외부 방문객 출입 규제 (사전 협의된 방문객 외에는 일체 출입 금지)

3 유증상자, 의심환자 발생 시 대응

가. 현장에서 발열 증상자 발생 시 대응

- 1) 37.5℃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 보건용 KF94 마스크 착용 후 즉시 귀가 조치 및 정부 예방 수칙에 따른 자가격리 안내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보건용 KF94 마스크 착용)
- 2) 귀가 후 7일간 출근 중지 및 충분한 휴식 취하며 경과 관찰
- 3) 38℃ 이상의 발열지속 또는 호흡기증상이 심해지면 관할 보건소, 1339 또는 지역번호+120으로 상담 후 선별진료소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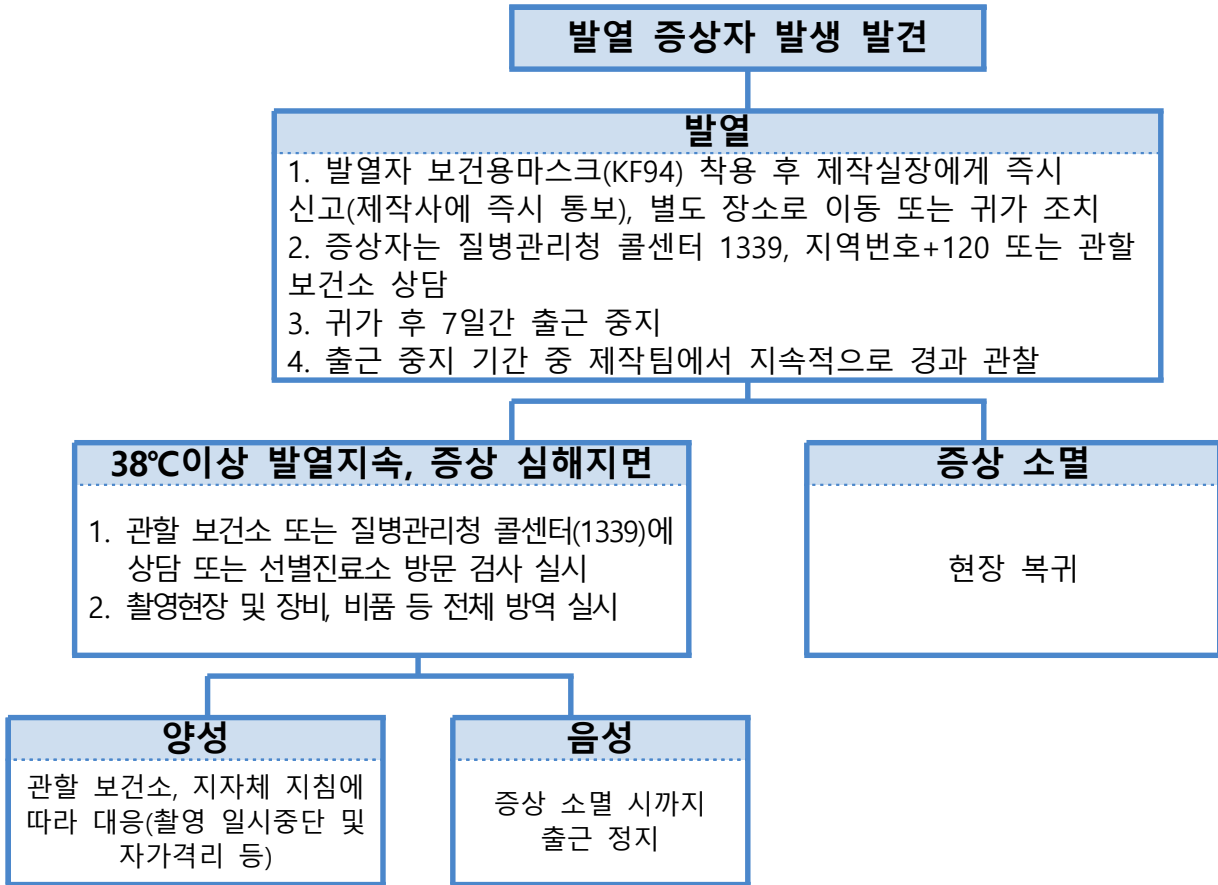
나. 확진자/접촉자 관련 대응

- 1) 확진자/접촉자는 즉시 자진 신고 및 현장 출입 제한
- 2) 해외입국자는 정부의 해외입국자 대응지침에 따름

다. 발열 증상자 귀가조치 전 머물렀던 공간은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 조치

라. 발열 증상자 대응 절차

- 아래 표 1 참고



<표1 발열증상자 대응절차>

4 확진환자 및 확진환자 접촉자 발생시 대응

- 가. 사실 확인 즉시 해당 사실을 제작사에 통보 후 제작 일시 중단
- 나. 상시 스태프 외에 함께 촬영했던 배우 및 협력업체(특효특분, 보조출연 등) 및 외부 방문객, 특수형태고용종사자(지원 스태프) 등에게도 반드시 통보
- 다. 관할 보건소, 지자체의 역학 조사와 격리 방침에 협조 대응

참고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현장 매뉴얼

1.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은 사전에 제작팀 혹은 각 파트장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2.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분과 접촉을 피하시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이 의심되는 분은 사전에 제작팀 혹은 각 파트장에게 공유해주십시오.
3. 최근 14일 이내 접촉자 중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분이 있으면 바로 제작팀 혹은 각 파트장에게 공유해주십시오.
4. 촬영 전일(혹은 당일)에 촬영 현장에 대한 방역(소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전 세팅이 필요한 파트는 제작팀과 세팅 일정에 대해 자세히 협의 해주십시오.
5. 촬영장소에 도착하면 체온 체크 후 고열 증상(37.5°C 이상)이 없을 시 촬영 현장 출입이 가능합니다. 발열 증상이 있을 시 바로 귀가 조치됩니다.
6. 촬영장소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 후 촬영장 출입이 가능합니다. 촬영 현장을 벗어난 후 복귀 시에도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 후 출입이 가능합니다.
7. 마스크 미착용 시 절대 현장에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8. 촬영 현장에서는 절대 마스크를 벗을 수 없습니다.
9.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진 외부 방문객의 촬영 현장 방문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다. 외부 방문객의 촬영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 스태프와 배우는 사전에 제작팀과 협의해주시시오.

10. 컵, 스푼, 접시 등은 공동사용을 금지합니다. 사용한 일회용 용품은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주시시오.
11. 호흡기 분비물(침, 가래 등) 접촉 시 손을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사용한 화장지 등은 꼭 쓰레기통에 버려주시시오.
12.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촬영 시 최소의 필요 스태프 외 현장 출입을 제한합니다.
13. 실내 공간에서 촬영 시 자주 환기를 해주십시오.
15. 촬영 종료 후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해주시고, 개인위생(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철저히 지켜주시시오.

참고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21.8.23. 조정)

※ 영화 촬영을 위한 집합 인원 규모에 대한 사항

영화진흥위원회 공지(21.1.4.)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과는 별도로 안내드리는 내용입니다. 본 집합기준은 방역당국 또는 지자체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촬영 전 촬영 지역 관할 지자체에 협의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 영화사(사업자에 한함) 촬영도 방송사 촬영과 동일하게 출연자, 스태프 등의 관계자에 대한 인원 제한은 없음. 다만, 방청객 등 청중이 모이는 것은 모임 행사에 해당하므로 단계별 인원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출연자, 촬영 및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라 하더라도 해당 인원을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에 대한 준수가 필요함
- 제작사가 아닌 학생 및 개인(독립영화) 영화제작은 사적모임으로 판단되며, 지역별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준수하여야함
- 학교 수업에 해당하는 영화 촬영의 경우 방역수칙 기준 "행사"로 인정되는지 또는 "사적모임이 아닌 공적모임"으로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촬영 장소의 지역관할 지자체(시, 군, 구)에서 판단하며 또한 단속하는 부분으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 협의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500명 미만 ▶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3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 집합금지
	■ 운영시간 제한x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3단계)			
클럽 무도장	■ 시설면적 8㎡ 당 1명	■ 시설면적 10㎡당 1명(2~3단계)		■ 집합금지
	■ 운영시간 제한x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홀덤 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2~3단계)		■ 집합금지
	■ 운영시간 제한x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 운영시간 제한x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1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예방접종 완료자 18시 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1시까지)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x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장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x	■ 운영시간 제한x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 운영시간 제한x	■ 운영시간 제한x	■ 운영시간 제한x - 수영장은 22시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마신 속도 6km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x	■ 운영시간 제한x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당 1명(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이후 운영 이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띄우기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m²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이후 운영 이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이후 운영 이용제한
결혼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m² 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m² 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m² 당 1명 	
장례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소별 4m² 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소별 100인 미만 + 4m²당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소별 50인 미만 + 4m²당1명 	
놀이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인원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인원의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인원의 50%(3~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이후 운영 이용제한
워터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인원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인원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인원의 30%(3~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이후 운영 이용제한
오락실 멀티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6m² 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8m² 당 1명(2~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이후 운영 이용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건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m² 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이후 운영 이용제한
카지노 (내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인원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인원의 30%(2~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이후 운영 이용제한
PC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띄우기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이후 운영 이용제한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관중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경륜·경정 경마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인원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인원의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인원의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6m² 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6m² 당 1명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6m² 당 1명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6m² 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전 객실의 3/4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전 객실의 2/3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파티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6m² 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8m² 당 1명 (2~4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공간대여업)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인 이내 (3~4단계)		
마사지안마소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인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인까지 가능(4단계) ■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10%(최대99명)
	■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학교	■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 원격수업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 4단계 지역은 ▲직계가족모임, ▲사적모임/행사, ▲종교활동 및 성가대 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